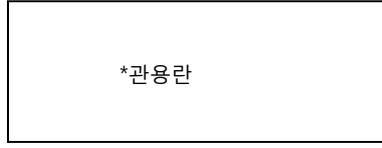


일본국 입국 사증(VISA) 신청서



성 (여권에 기재된 대로) _____ 한자 - 성 _____

명 (여권에 기재된 대로) _____ 한자 - 명 _____

다른 이름(본명 이외의 평소 사용하는 이름) _____ 한자 _____

생년월일 _____ (일)/(월)/(년) 출생지 _____ (구/시) _____ (시/도) _____ (국)

성별 : 남 여 혼인여부 : 미혼 기혼 사별 이혼

국적 또는 시민권 _____

원국적 / 또는 다른 국적 또는 시민권 _____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번호 (주민등록번호) _____

여권종류 : 외교 관용 일반 기타

여권번호 _____

발행지 _____ 발행일 _____ (일)/(월)/(년)

발행기관 _____ 만기일 _____ (일)/(월)/(년)

방일목적 _____

일본체류예정기간 _____

일본입국예정일 _____

입국항 _____ 이용선박 또는 항공편명 _____

숙박 호텔 또는 지인의 이름과 주소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주소 _____

이전에 일본에 체재한 날짜 및 기간 _____

현주소(만약 한군데 이상 주소가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현 직업 및 직위 _____

고용주의 이름 및 주소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주소 _____

* 배우자의 직업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직업)

일본 내 신원보증인 (일본 내 보증인 또는 방문자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주소 _____

생년월일 _____ 성별 : 남 여

(일)/(월)/(년)

신청인과의 관계 _____

현 직업 및 직위 _____

국적 및 체류자격 _____

일본 내 초청인 (초청인이 보증인과 동일한 경우 "상동"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주소 _____

생년월일 _____ 성별 : 남 여

(일)/(월)/(년)

신청인과의 관계 _____

현 직업 및 직위 _____

국적 및 체류자격 _____

* 비고/특기사항 _____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 어떤 국가에서든 법률위반 또는 범죄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어떤 국가에서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불법행위나 불법장기체재 등으로 강제퇴거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마약, 대마초, 아편, 흥분제,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매춘행위, 타인을 위한 매춘부 중개 및 알선, 매춘행위를 위한 장소제공 또는 매춘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타인을 선동하거나 도운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면, 그 형이 보류중이라도 "예"에 표시하십시오.

만약 "예"에 표시했다면, 죄명이나 위반사항을 명시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십시오.

상기의 진술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입국항에서 입국심사관이 부여하는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에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본인은 사증을 가지고 있어도, 일본에 도착한 시점에서 입국자격이 없다고 판명되면 일본에 입국할 수 없다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또는 본인의 사증 신청을 대신한 권한 내에서 공인된 여행사가) 상기의 개인 정보를 일본대사관 / 총영사관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여행사에 위임하여) 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 비용을 지불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일 _____
(일)/(월)/(년)

신청인 서명 _____

*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신청서에 기입된 개인정보 및 사증신청을 위해 제출된 추가정보(이하, 「보유개인정보」)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58호, 이하, 「법」)에 따라 적절하게 취급됩니다. 보유개인정보는 사증신청을 처리하는 목적(탑승예정인 운송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의 제공,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태 발생 시 대체편의 수배 등에 관한 당초 탑승예정인 아닌 운송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등의 제공을 포함)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 및 법제8조에 따라 기타 목적을 위해 이용됩니다.